공 개

의안번호	제 34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21. (제 2 차)

의결사항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1. 21.

1. 의결주문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,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(찬성주식수, 반대·기권 등 주식수)를 공시(안 제4-3조제1항제3호나목)

나.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4-3조제1항제3호더목 및 러목)

4. 참고사항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1>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1>

<별지1>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주주총회 의사록 요약”을 “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(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

러.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-3조제1항제3호더목 및 러목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보고서등 적용례) 제4-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.

<별첨1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-3조(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)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4-3조 ①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3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	나.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(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)
다. ~ 거. (생 략)	다. ~ 거.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더.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
(신 설)	러.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공정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88